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소액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금지

-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보험계약의 강제해지가 저소득층 보험계약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,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.
 - 최근 언론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생명보험까지 강제해지하여 환자의 치료비까지 못 받게 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금감원의 민원 창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접수됨.
 -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체대금을 완납하고 보험계약이 부활되기를 원하나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처함.
 - 강제집행에 의한 계약해지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짐.
- 금감원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까지 강제해지하는 것은 서민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보장성보험의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법률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.
 -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소액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자제하도록 지도함.
 - ‘국세징수법’에서는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금융회사의 압류 및 추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님.
 - ‘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동 계약의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’는 보험약관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함.
 - 보험계약의 압류 및 추심 행위 시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예정임.
 - ‘국세징수법’의 소액금융재산의 압류 및 추심행위 금지조항을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건의함.

(금융회사의 채무연체자 보험계약해지 관련 개선방안, 금감원, 1/6)